

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

- 내년 2월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
압류금지 금액을 상향하여 민생보호 강화 -

- 법무부는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.
(10. 28. ~ 12. 8.)
- 개정안은 ▶ 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(1인 1계좌)의 시행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▶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→
월 250만 원으로, 사망보험금 1,000만 원 → 1,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
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※ (생계비계좌)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,
전 국민은 2026. 2.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

【 개정안 주요 내용 】

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신설

- ▶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
- ▶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▶ 국내은행(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,
인터넷전문은행), ▶ 저축은행, ▶ 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
▶ 우체국으로 규정

②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

| 유형 | 현행 | 개정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압류금지 생계비 | 185만 원 | 250만 원 |
|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 | 월 185만 원 | 월 250만 원 |
|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| 사망보험금 1천만 원 | 1,500만 원 |
| | 만기·해약환급금(일부) 150만 원 | 250만 원 |

1. 추진 배경

-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「민사집행법」이 2026. 2. 1. 시행될 예정입니다.
※ 현재도 1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나,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,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 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임 (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,014건)
이에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,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민사집행법」 개정됨
- 한편,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85만 원(개정 전 150만 원)으로 상향되었는데, 그 후 물가,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.
- 이에 법무부는 수개월간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압류금지 생계비 등 압류금지 금액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의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2. 개정안 주요 내용

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신설

-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,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*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* ▲ 국내은행(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, 인터넷전문은행), ▲ 저축은행, ▲ 상호금융 (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▲ 우체국

-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압류금지 생계비는 현행 압류금지 예금인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

- 다만, 반복적인 입·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 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
- 아울러,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('민사집행법' 제195조제3호)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,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.

- ❖ 500만 원을 빚진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 200만 원, B은행 100만 원 뿐이라면?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개정 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채무자는 A, B은행의 출금 제한으로 <u>일단 전액 인출 불가</u> ※ 채권자는 A은행 예금 중 15만 원(200만 원-185만 원)은 추심 가능 ■ 이에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A은행 예금 중 185만 원의 인출 가능 |
| 개정 後 (생계비계좌는 A은행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생계비계좌 예금 200만 원은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 가능</u> ■ B은행 예금 중 <u>50만 원까지 추가로 보호됨</u> |

②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

-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*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
*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1/2의 압류가 금지되나,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소 압류금지 금액을 설정하고 있음

- 또한,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도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.

- (사망보험금) 현행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상향
- (▲ 만기환급금, ▲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·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)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

○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(개별 잔액 250만 원)과의 불균형도 해소됩니다.

※ 2024년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상향

○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3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, 소상공인·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-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- 앞으로도 법무부는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【불 임】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신·구 조문 대비표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| 책임자 | 법무심의관 조아라 (02-2110-3164) |
| | | 담당자 | 검사 박준석 (02-2110-3507) |



| | |
|---|---|
| 1. 사망보험금 중 <u>1천만원</u> 이하의 보험금 | 1. ----- <u>1천5백만원</u> ----- |
| 2. (생 략) | 2. (현행과 같음) |
| 3.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| 3. ----- -- |
| 가. (생 략) | 가. (현행과 같음) |
| 나.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<u>150만원</u> 이하의 금액 | 나. ----- ----- ----- <u>250만원</u> ----- |
| 4.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<u>150만원</u> 이하의 금액 | 4. ----- <u>250만원</u> -----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7조(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)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<u>185만원</u>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<u>185만원</u> 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 제7조(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) 법 제246조제1항제9호----- ----- ----- <u>250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 금전이나 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있으면 <u>250만원</u> -----. |
| <신 설> | 제8조(생계비계좌)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”이란 <u>250만원</u> 을 말한다. |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 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는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본다.

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 산업은행 및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
2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
3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,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

4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

법률에 따른 체신관서

④ 제3항의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 또는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생계비계좌의 개설·해지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의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제4항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고,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